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 구체화 및 신청 절차 마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유효기간 등 규정(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원상복구 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등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신설(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 마.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8항,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3제4항, 제51조의4제4항, 제51조의5제1항·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시행,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

지 신고 후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한 대형 이륜자동차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나. 2025년 3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4조(이륜자동차 사용검사의 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표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
른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
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
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 등”
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
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이륜자동

차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각각 다시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이하 “사용폐지신고”라 한다) 후 다시 사용신고한 날짜가 당초 사용폐지 전의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경과한 이륜자동차(제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이륜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이륜자동차

제6조(이륜자동차 튜닝검사의 신청)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제7조(이륜자동차 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는 한 번만 실시한다.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9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이륜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8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

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는 각각 튜닝 또는 검사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한정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이하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라 한다)에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가.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 경우[자형(字形)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이륜자동차번호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다르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 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위치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2. 휠 또는 타이어가 균열되거나 손상된 경우
-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4. 연료장치의 누유가 있는 경우
- 5. 전기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6.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 초과
- 7. 등화장치
 -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 또는 등광색 기준 부적합
 -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 8. 경음기의 미작동, 음색이 동일하지 않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9.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이륜자동차

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을 기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튜닝사항 기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사)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용폐지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와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및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5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 다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이륜자동차 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산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일부터 기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 이륜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이륜자동차를 도난·압류 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인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9조제6항에 따른 출장검사인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 또는 검사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행정처분서

다.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라.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 검사를 유예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 방법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14조(검사장면의 기록·보관)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 장면 및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검사 진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출장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진로에서 촬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 이륜자동차의 검사명령 등

제15조(검사·원상복구의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원상복구·임시검사: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

2. 정기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검사·원상복구의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 교부하는 운행정지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를 완료한 때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5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제18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 등의 기준) 법 제51조의2제2항 및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
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1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

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제1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51조의3 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51조

의4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취소사실을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다.

제24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 등) ①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1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연합회로서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4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문교육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전문교육기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4. 출·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을 명하거나 직무를 정지하게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의4제4항 및 제51조의5제5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5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8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9호서식

④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청문 및 감경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⑥ 시·도지사가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부여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 규칙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이 규칙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날에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다.

제4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9조제4항제9호의 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술인력 자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제정규정 중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교육과 환경부 장관의 위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검사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검사교육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이 2026년 3월 14일까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륜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이륜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한다.

나. 이륜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감각기관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각기관·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이륜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사용신고필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 2) 배기관의 열림방향 및 각종 등화장치의 광도와 색도 등 육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 4) 원동기 배기량, 출력 등 이륜자동차를 분해하여야 검사가 가능한 경우

2. 이륜자동차 검사항목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 동일성 확인	이륜자동차의 표기와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전산 자료에 기록된 차대번호 및 이륜자동차번호와 일치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방법 및 상태가 양호할 것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방법 및 상태 확인
2) 제원측정	사용신고필증 또는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를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여부 확인
3) 원동기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하고 윤활유의 누출이 없을 것 다) 냉각장치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공회전 시 진동 및 이상음 확인 원동기 부품의 파손·변형·균열 등 손상여부 확인 및 윤활유 계통의 누유 확인 냉각장치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전달장치	변속장치의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장치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 연결부의 손상·변형·균열 여부 확인
5) 주행장치	휠, 타이어 등의 균열·손상·변형·부식이 없고, 체결된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고정될 것	휠, 타이어 등의 균열·손상·변형·부식 여부 확인
6) 조종장치	조작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제어장치·변속장치·제동장치·동력전달장치·등화점등장치·경음기·방향지시등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	조향 및 주변장치는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가) 조향 및 주변장치 조작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는 구조 확인
		나) 조향 및 주변장치의 파손·변형·균열·풀림·누유 상태 확인
8) 제동장치	가) 제동계통 장치의 손상·마모·균열·부식 등이 없을 것	가) 제동계통 장치의 손상·마모·균열·부식 및 작동상태를 확인
	나) 제동계통 장치의 오일 누유가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나) 제동액 저장장치 유체량 확인 다) 제동 및 주변장치의 파손·변형·균열·풀림·누유 상태 확인
9) 완충장치	스프링 및 쇼크 업소버 등 완충장치의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쇼크 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10) 연료장치	연료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 연료탱크 및 파이프 손상·변형 여부 확인 나)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
11) 전기장치	가) 전기장치 전기배선은 절연물질로 덮여있을 것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충전구 등	전기배선 손상여부 및 절연물질로 덮여 있는지 확인 가) 고전원전기장치의 설치상태,

	<p>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p> <p>(2)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p> <p>(3)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p>	<p>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상태 등을 맨눈으로 확인</p> <p>나)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p> <p>다) 맨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인</p>
12) 차체	<p>가) 차체의 부식·손상 등으로 차체의 변형이 없을 것</p> <p>나) 차체의 외형이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을 것</p>	<p>가) 차체의 부식 또는 변형 확인</p> <p>나) 차체의 외관 확인</p>
13) 승차장치	<p>가) 승차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p> <p>나)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에 손잡이 및 발걸이가 장착되어 있을 것</p>	<p>가) 승차장치의 설치상태 확인</p> <p>나)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에 손잡이·발걸이의 설치상태 확인</p>
14) 물품적재장치	<p>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p> <p>나) 적재함이 개조가 없을 것</p>	<p>물품적재장치의 설치 상태 확인</p>
15) 방풍장치	<p>방풍장치가 장착된 경우 운전자의 가시성을 방해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치될 것</p>	<p>방풍장치 설치상태 확인</p>
16)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p>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p>	<p>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구조 또는 훼손·조작 여부 확인</p>
	<p>나) 소음기 및 배기관을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p>	<p>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 여부 등 확인</p>
	<p>다)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소음허용기준에 적</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p>

	합할 것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소음 측정
17) 등화장치	가)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 할 것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미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 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나)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여부 확인
18) 경음기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하고 경적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
19) 간접시계장치	간접시계장치는 장착상태가 안정적이고,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간접시계장치의 설치상태 및 손상 여부 확인

※ 비고

이륜자동차검사 중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검사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19조·제24조 관련)

1. 검사시설

-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 라. 「건축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검사장비

장비명	비 고
가.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주제어 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교정용표준가스 3조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 이상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1대 이상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측자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마. 소음측정기(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 판정과 기

<p>상의 성능을 지진 소음계 및 구 부속기기를 말한다)</p> <p>바.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p>	<p>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p> <p>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p>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p>
--	---

비고 :

검사용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확인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구분	자 격	직 무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p>1)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p> <p>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p>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p>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나.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비고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검사능력

구 분	검사능력대수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6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8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및 자세 함양 ·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나.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이륜자동차검사 등 신기술 · 이륜자동차(전기이륜자동차 포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1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이륜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처리 방법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2시간 이상	· 검사실습(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다.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교육방법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성교육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이론교육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이론 및 실습교육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비고

1. 신규교육의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3. 교육인원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회당 40명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의 일정 및 차수 등에 대한 연중 계획을 세워 공지하고, 교육 신청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교육일정 및 차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교육수수료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기숙여부 및 그 비용은 교육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의 교육성취 정도와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임시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이 당초에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출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 검사원 교육에 관한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장비 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사무에 필요한 면적(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강의실	60m ² 이상
다. 실습실	50m ² 이상
라. 전산시스템	인터넷 교육 신청 및 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수료 발급 및 교육 이력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마. 실습장비	1) 전기 이륜자동차 1대 이상 2) 내연기관 이륜자동차 1대 이상 3) 전기 이륜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및 안전장비 1조 이상 4) 별표 2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용 기계·기구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용 기계·기구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여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의자 및 빔 프로젝터·환등기·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실습실에는 실습과목에 필요한 장비와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력 기준

-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나. 전임강사는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다. 강사의 자격기준

교육과목	기 준	인원
1) 인성교육	가) 고객만족, 갈등관리 등 고객응대 관련 분야 업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교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 외)]

2)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자동차검사(자동차 배출가스검사를 포함한다)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1년 이 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연구 · 교수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및 이륜자동차 검사실무 겸임가능]
3) 이륜자동차 검사기기 (전산)	가) 자동차검사 전산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이륜자동차 검사기기(전산 외) 및 이륜자 동차 검사실무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 분야에서 실무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자동차 및 기계공학 계열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 지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자동차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등)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장비(차대동력계, 배출가 스분석기, 매연측정기 등)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분야에 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기계·전기 · 전자계열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검사 분야에 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 격을 갖추고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경력 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비고

1. 외부강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강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검사지정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관할 관청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검사지정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마.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관할 관청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사.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검사지정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2)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륜자동차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

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 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2호 및 법 제51조의5 제2항제1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5제 2항제2호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4호 및 법 제51조5제 2항제2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5호 및 법 제51조5제 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사.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	법 제51조의4 제1항제6호 및 법 제51조5제 2항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관한 경우			
아.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7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자.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8호 및 법 제51조5제2항제6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차.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9호 및 법 제51조5제2항제7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10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타. 법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11호 및 법 제51조의5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파. 법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의4 제1항제12호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p>하. 법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3호</p>	<p>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p>	
<p>거. 법 제5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8호</p>	<p>지정취소</p>	
<p>너.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4호</p>	<p>지정취소</p>	
<p>더.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5호</p>	<p>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p>	
<p>러.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p>	<p>법 제51조의5 제2항제3호</p>		<p>직무정지 10일</p>
<p>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6호</p>	<p>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p>	
<p>버.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p>	<p>법 제51조의4 제1항제17호</p>	<p>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p>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

검사구분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성명(상호)
	최초신고일	차명(제작사)	모델연도
	규모	이전주행거리	현주행거리
제원관리번호		다음검사기간 (재검사기간)	~
튜닝내역(튜닝일자)			

1부 검사항목				2부 검사항목			
항목	판정	항목	판정	검사항목	측정치	허용기준	판정
동일성확인		차체·차대		배출 가스	일산화탄소(CO)	%	%
동력전달		승차장치			탄화수소(HC)	%	%
주행장치		배기장치				ppm	ppm
조향장치		등화장치		소음	배기소음	ppm	ppm
제동장치		경보장치			dB(A)	dB(A)	
완충장치		계기장치			dB(A)	dB(A)	
				dB(C)	dB(C)		

차 체	길이(mm) :	차량중량(kg) :	원 형식 :	특기사항
	너비(mm) :	총 중 량(kg) :	동 배기량(cc) :	
	높이(mm) :	승차정원(명) :	기 정격출력/회전수 :	

검사원	부적합 내역	시정권고 내역	종합판정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검사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인

유의사항

- 검사결과는 적합이므로, 고객님의 다음 검사기간은 검사만료일로부터 전 90일·후 31일입니다. : (적합인 경우)
- 검사결과는 부적합이므로,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0000-00-00)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소유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표시	차명(형식)		모델연도
	총중량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주요제원	차체	길이 cm	승차정원 ps/rpm
		너비 cm	최대적재량 kg
		높이 cm	차량중량 kg
			원동기출력 cc
			총배기량 cc
			연료의종류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4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인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형식"은 "전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원동기마력"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나타냅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중)70 g/m²]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검사유효기간(명령이행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2.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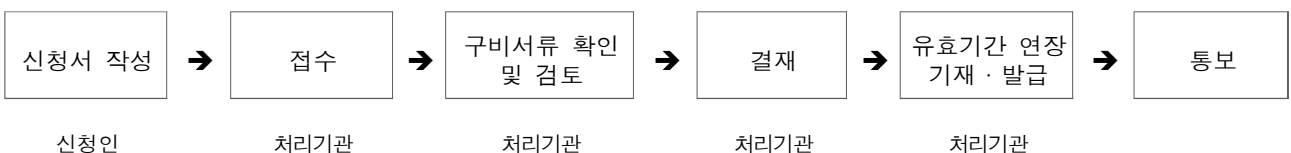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륜자동차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튜닝검사 기간			
신청내용	연장 신청기간			
	연장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장 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 임시검사 명령서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	차명 및 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적 발 내 용			
적발일시 및 장소			
명령 사항	명령사유	<input type="checkbox"/>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 ·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	
	이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원상복구 <input type="checkbox"/> 임시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검사	검사장소		
	검사일		
<p>「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제52조,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p>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검사소	전화번호			
	주소			
부지면적		건물면적		
m ²		m ²		
검사장비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제2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열람표와 배치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20,000원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1. 명칭: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
4. 검사소의 소재지:

위 사람을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제2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동차정비업종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2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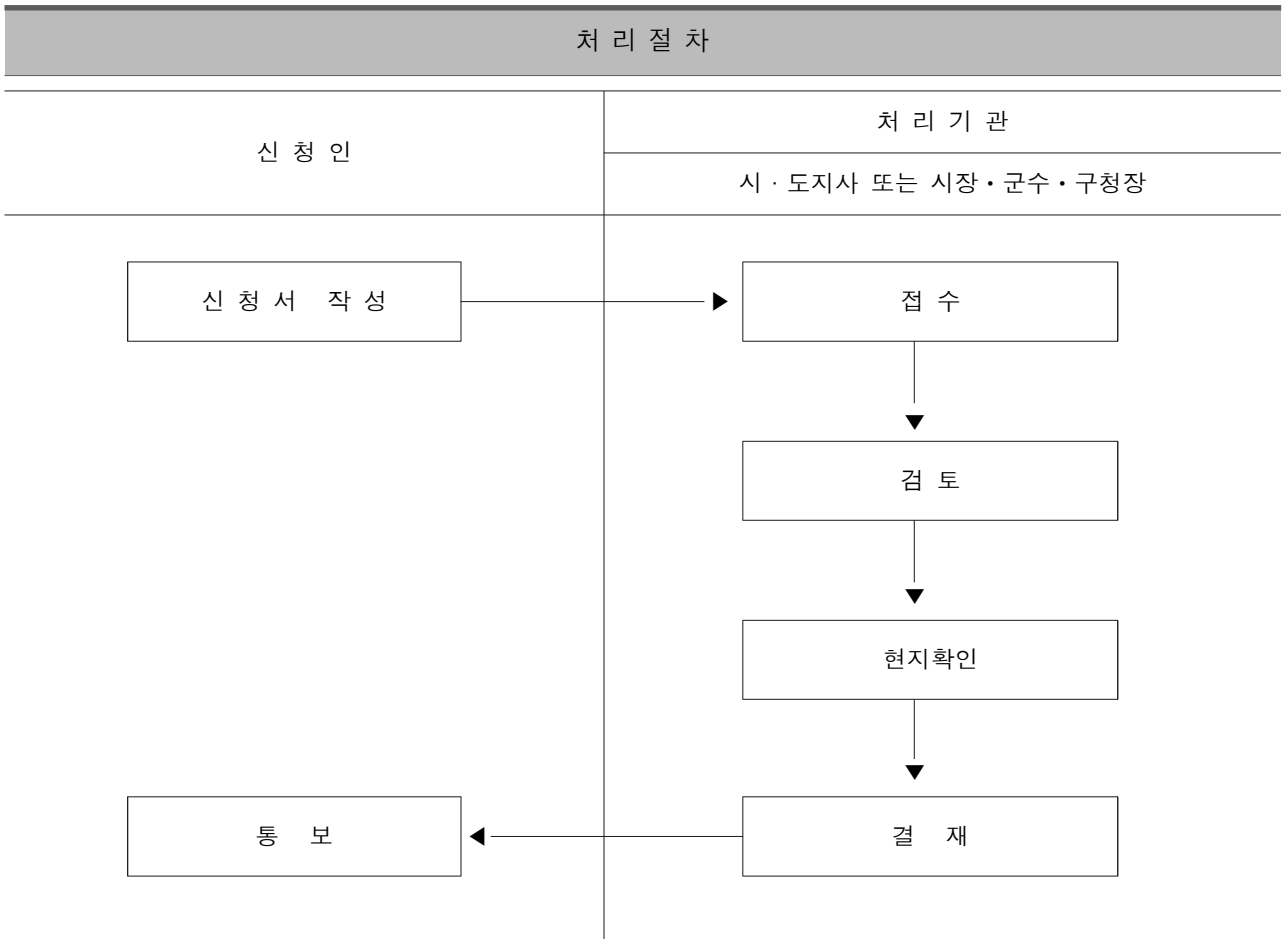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 소재지:

위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1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내용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 내용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제8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제 호

이륜자동차 검사원교육 수료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교육과정명 :
4. 교육분야 :
5. 교육기간 :

위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제46조의2제1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전문교육기관의 장

(인)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2. 성명(대표자):
3. 주 소:
4. 교육명칭:
5. 교육목적:
6. 교육운영 장소: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제46조의2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통지서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의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 분 대 장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처분 연월일	④ 위반내용	⑤ 처분내용	⑥ 기록자인	⑦ 비고	

268mm × 190mm(인쇄용지(특급) 80g/㎡)